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사건번호서울행법 2000구

[판결요지]

망인은 요양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음에 불과하나 3년여간의 투병생활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 재발되다 결국 심각한 후유장애로 젊은 나이에 노동복귀도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됐고 더욱이 혼인 후 6개월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 우울감과 죄책감이 겹쳐 결국 자살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박○○(이하 '망인' 이라 한다)

가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 한다)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무하던 중 1996. 1월 소외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지하주차타워파레트 인양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 이라고 한다)를 입고 치료받던 중 1999. 3월 투신자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가정환경이나 주위 인간관계에 의한 것으로 개인적 의도에 다른 자살일 뿐, 최초 상병에 따른 정신과적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업무상 재해와 요양과정

망인은 소외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주차타워 파레트 인양작업을 하다가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대퇴골, 무릎 등을 크게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망인은 1년간 최초 상병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안면부 및 우슬관절 좌절, 뇌진탕, 추가상병 측두하악관절 장애인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내과, 정신과 등 타과적인 치료와 항우울

제, 항불안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최초 상병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남았고, 또한 노동복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오랜 요양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세의 뚜렷한 호전이 없는데다가, 재해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남게 되어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고, 특히 1997년 9월경 혼인하였으나, 1998년 4월경 이혼하면서 몹시 괴로워하였다.

(나) 망인은 1999. 3월에 자살하려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구조되어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병원을 빠져 나와 결국 투신 자살을 하였다.

③ 자살의 원인 등

(가) 신경증은 불안, 공포, 강박사고 및 행동, 신체증상, 우울증적 반응과 같은 감정적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정신장애로서 성격, 사회 적응 태도, 대인관계성, 사고에 대한 환자의 감정,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환자의 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발생원인이다.

(나) 자살은 심한 우울증, 적개심의 자기 내부로의 전환, 주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도, 개인적인 죄책감, 때로는 보복을 위한 행위 등으로 시도하는데, 망인은 최초 상병과 관련된 괴로운 상황, 동통, 능력의 감소, 죄책감, 우울감정, 불안감 등의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적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증이 발생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충동적인 자살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자의 상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상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당초의 상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되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망인은 요양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음에 불과하나, 3년여간의 투병생활 동안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 및 재발되다가 결국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자살당시 만 30세 남짓의 젊은 나이임에도 노동복귀가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더욱이 혼인 후 6개월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의 우울감과 죄책감 등이 겹쳐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③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입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